

2022년 축산환경관리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2. 9.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제21조(실지감사)의 규정

□ 감사목적

- 축산환경관리원의 주요 사업과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간) 2022. 5. 9. ~ 2022. 5. 20.
- (인원) 감사담당관 외 6명

□ 감사대상

- 축산환경관리원

□ 감사범위

- 최근 3년간(2019~2021)의 기관 운영, 사업 추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II. 감사결과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지침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주의	관계기관	축산환경관리원(경영전략실)

- 축산환경관리원은 성희롱 등 예방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2020년 이후 해당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제정하여야 하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제정하지 않음

축산환경관리원

-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서 정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요구 (주의)
-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관련 규정 개정 요구 (개선)

2	개인정보 보호지침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주의	관계기관	축산환경관리원(경영전략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유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 축산환경관리원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는 5일 이내에 파기하거나,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축산환경관리원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나,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음

축산환경관리원

①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한 개인정보 파기, 유출 통보, 정정·삭제 등의 처리기한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처리기한과 일치되도록 개정 요구 (개선)

②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요구 (주의)

3	고정자산관리 규정 미준수		
처분요구	주의	관계기관	축산환경관리원(경영전략실)

- 고정자산 관리책임자는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재물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근거해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 2019년에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재물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함

축산환경관리원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재물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요구 (주의)

4	통합공시 불성실 수행		
처분요구	주의	관계기관	축산환경관리원(경영전략실)

- 축산환경관리원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2조(통합공시의 방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 통하여 국민에게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하나,
- 2021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공시오류, 지연공시, 허위공시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

축산환경관리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기관주의’ 조치를 초래한 관련자들에게 ‘주의’ 조치 요구 (주의)

5	축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운영 미흡		
처분요구	통보(2)	조치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축산환경관리원(교육기술부)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는 ICT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축산환경관리원에 축산악취관리지원 시스템 연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20~’21년에 ICT 기계·장비 설치 446개소 중 설치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 301개소(67.5%)이며, 미연계된 경우도 25개소(5.6%)가 있는 등 ICT 기계·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음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은 악취발생, 센서 에러 등 상황발생시 관련 정보를 농가 및 지자체에 문자 등을 발송하여야 하나,
 - 암모니아 농도(277ppm)가 기준치(20ppm)보다 13배를 초과하는데도 발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농가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문자 발송 기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
- * 암모니아(NH₃)의 측정농도가 20ppm을 넘는 횟수가 8시간(30분 간격 16회 측정) 중 50%(8회) 이상
- 또한, 암모니아 농도(8,084ppm)가 과다하게 측정되어 센서 작동 에러 가능성이 있는데도 현장점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이 사업대상자로부터 기계장비 설치 전에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 연계신청서를 제출받게 하는 등 악취측정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측정될 경우 농가에 통보하는 등 객관적인 발송기준을 마련하고, 연속적으로 동일한 수치가 측정되는 등 ICT 기계·장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 마련 요구 (통보)

6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 관리 및 시험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주의, 경고, 통보(3)	조치기관	축산환경관리원(교육기술부)

- 축산환경관리원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검정과목·방법, 응시 자격 등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자격운영 규정”이라 한다)’ 중 시험과목, 시험형태, 응시자격을 2회 개정하면서 농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자격운영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를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최소 40점(과락기준) 이상이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정하고 있고, 2021년 3급 자격시험 공고 시 시험과목을 3개 과목으로 공고하였으나,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3개 과목 평균점수를 적용하지 않고 세부 8개 과목의 평균점수를 적용하는 등 합격자 결정 방법을 자격운영 규정 및 공고문과 다르게 운영함
 - 그 결과,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 35명에게 자격운영 규정 및 공고문을 적용하여 3개 과목 평균점수를 적용할 경우 7명은 합격 처리가 되어야 함
- 자격운영 규정에 따라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15%±5%, 난이도가 보통인 문제는 40%±5%,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45%±5%로 시험문제를 선정하여야 하나,
- 2021년 3급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많이 출제(18 문항, 22.5%)하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적게 출제(29 문항, 36.2%)하여 자격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

농림축산식품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축산환경컨설팅트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합격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요구 (기관주의)

축산환경관리원

① 자격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필기시험의 합격자 선정 기준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경고” 조치 요구 (경고)

② 시험과목, 시험형태, 응시자격 등을 변경한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승인받기 위해 「자격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통보)

③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합격자 선정 기준과 다르게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정함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에 대한 구제방안 등 마련 요구 (통보)

④ 자격시험의 문제를 선정할 경우 규정에 따라 시험문제 난이도를 정하는 등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7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대상자 평가 미흡		
처분요구	개선	조치기관	축산환경관리원(환경관리부)

-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경우 평가항목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구분하고 계량적 평가 요소인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하나,
-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 평가항목을 구성하면서 계량적 요소인 정량평가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동일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이 각각 상이한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였음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평가항목 중 계량 평가항목인 정량평가와 평가위원 재량 평가항목인 정성평가를 구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정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과 평가표 개선 요구 (개선)

8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주의, 개선, 통보	조치기관	축산환경관리원(경영전략실)

- 축산환경관리원은 국고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찰공고 기간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내부 ‘계약 규정’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마련되어야 하나,
 - 국가계약법에서 명시한 입찰공고 기간인 5일 미만으로 공고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긴급공고와 재공고도 10일 미만으로 공고
 - 자체 ‘계약 규정’에 긴급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일 경우 3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입찰공고 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음
-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면, 계약 이행사항의 준수 여부 등 검사를 14일 이내에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 사업부서는 계약 완료한 물품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부서에 대가 지급요청을 하였으며, 계약부서는 물품에 대한 검사조서를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
-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대가 지급일까지 14일 내지 17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됨

농림축산식품부

일반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계약에 대한 검수 및 검사조서 미작성, 계약 대가 지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요구 (기관주의)

축산환경관리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 및 재공고 일반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입찰공고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규정’ 개정 요구 (개선)

② 계약업무를 추진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도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 등 조치 요구 (통보)

9	상품권 구매 및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조치기관	축산환경관리원(경영전략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품권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연간 구매 계획 수립,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배부대장 운용, 정보공개 등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 축산환경관리원은 상품권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회계담당부서인 운영지원팀이 상품권 구매 및 배부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직원복지, 포상 등의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부서별 담당자가 개별 구입하여 관리
- 그 결과,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구매한 상품권 14,940천 원 중 1,500천 원에 대해서는 자필서명이 없어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가 불투명함

축산환경관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상품권의 구매·사용에 관한 계획수립, 배부대장 관리, 실태점검, 정보공개 등을 정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상품권에 대한 관리 강화 (개선)

10	회계규정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개선	조치기관	축산환경관리원(경영전략실)

- 축산환경관리원은 회계규정에서 정한 직위에 임명된 직원이 재무관과 지출관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직위가 공석일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나,

- 재무관 권한이 없는 총괄본부장이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고, 지출관 권한이 없는 경영지원부장, 기획전략팀장, 경영전략실장 등이 지출관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계규정 운영을 부적절하게 함
- 축산환경관리원은 각 회계단위별 회계관계직원을 지정하고,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해 적절한 재정보증 조치를 하여야 하나,
 - 자산관리, 물품관리, 수입징수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한 재정보증 조치를 하지 않음

축산환경관리원

- ① 재무관, 지출관 등의 회계업무를 '회계규정'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임명된 직원이 수행하도록 철저한 관리 요구 (통보)
- ② 회계책임자 임명, 각 회계단위별 담당 지정,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한 재정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회계규정' 개정 요구 (개선)